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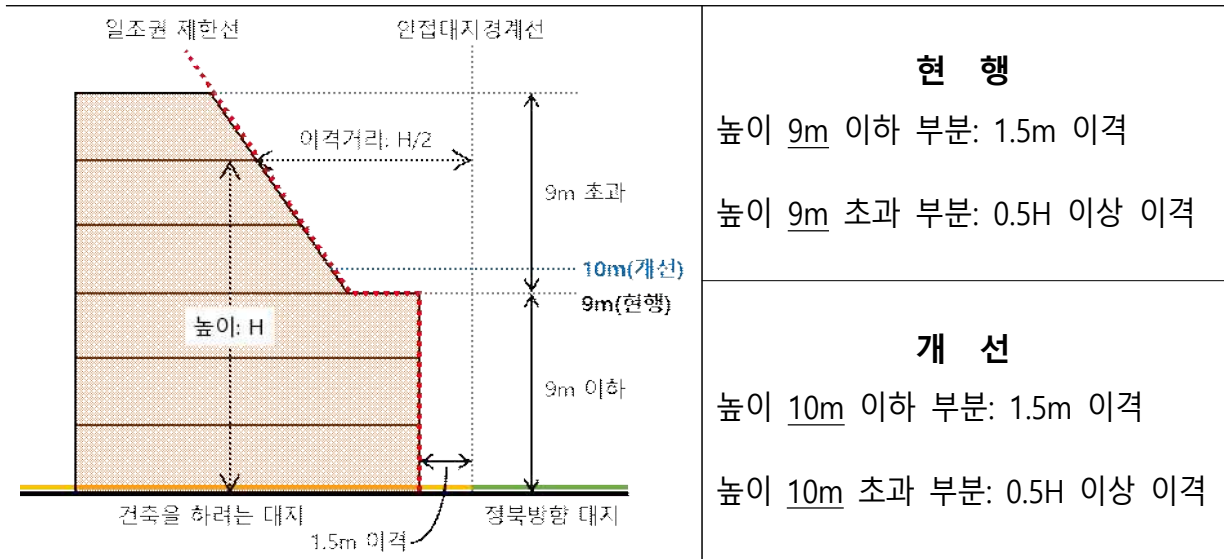
종전에는 정북(正北)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

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까지 1.5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

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까지 1.5미터 이상 띄우도록

1.5미터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완화하는 것입니다.

< 전용·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(정북방향 이격) >



- 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9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.
- 지난 9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)는 건축조례가 개정된 이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조속히 조례가 개정되어야

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가

서울시민의 삶에 적용되는 상황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